

소규모펀드 공시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기준일 : 2025년 11월 30일)

1) 소규모펀드 여부 공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의거)

회사명	펀드명1(운용펀드)	펀드명2(투자자펀드)	협회표준코드1 (운용펀드)	협회표준코드2 (투자자펀드)	발생일자
해당사항 없음					

2) 소규모펀드(1개월) 여부 공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 의거)

회사명	펀드명1(운용펀드)	펀드명2(투자자펀드)	협회표준코드1 (운용펀드)	협회표준코드2 (투자자펀드)	발생일자
해당사항 없음					

3)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회사명	펀드코드 ¹⁾ (운용펀드기준)	펀드명 ¹⁾ (운용펀드기준)	효력발생일 ²⁾ (등록일)	최초설정일 ²⁾	소규모 펀드가 된 시점 ²⁾	정리 방법 ³⁾	정리일 ²⁾⁴⁾	비고
해당사항 없음								

- 1) 모자형구조인 경우는 모펀드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
2) YYYY-MM-DD 방식으로 기재
3)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이전", "모펀드교체", "기타" 중에 택1하여 기재. 단 기타의 경우 ()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예) 기타(추가판매) 등
4) 모자형 이전의 경우 수익자통지일을 소규모펀드 정리일로 기재

4)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세부)

회사명	모자형구조 해당여부	펀드명1(운용펀드)	펀드명2(투자자펀드)	펀드코드 ¹⁾ (운용펀드)	펀드코드 ¹⁾ (투자자펀드)	근거법률 ²⁾	정리일자
해당사항 없음							

- 1) 펀드 코드는 반드시 12자리 코드로 기재
2) 근거법률은 "증투법", "간투법", "자본시장법" 중에 기재

※ 소규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